#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86 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윤건영・이기헌・박선원

김영배 · 조계원 · 김병기

송기헌 · 노종면 · 박홍배

문정복 · 김영환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,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.8%에 달했음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,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,035명이 청소년이었음.

문제는 「학교보건법」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 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

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(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「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교육 및 상담 연계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	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	②		
업무를 수행한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7.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		
	예방과 치유를 위한 「사행산		
	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		
	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		
	교육 및 상담 연계		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